

의 번 호	654
-------------	-----

【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】
검 토 보 고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· 제출자 : 2008. 11. 11(화) ·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08. 11. 11(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08. 12. 1(월)

2. 제안이유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,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 노인지회 부지 매입, 구민운동장조성 및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, 솟못저수지내 사유지매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중구 노인지회 부지매입

- 위치 :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785-1번지
- 부지면적 : 1,312.3m²
- 추정가액 : 1,299,177천원

※ 건물면적 : 지상 3층 617.13m², 건축년도 : 1989년

- 취득사유 : 노인여가 공간활용

나. 구민운동장 부지매입

- 위치 :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925번지 일원
- 부지면적 : 27필지, 41,430.0m², 기매입 → 12필지 10,174m²
- 추정가액 : 2,142,775천원
- 취득사유 : 구민운동장 조성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체육에 기여

다.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 부지 매입

- 위치 :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891번지 일원
- 부지면적 : 7필지, 9,980.0m²
- 추정가액 : 727,870천원
- 취득사유 : 태화강 둔치의 테니스장이 유수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울산광역시로부터 이전 촉구를 받고 있음. 따라서 테니스장을 이전하여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함

라. 숯못저수지내 부지매입

- 위치 :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761-3번지 일원
- 부지면적 : 3필지, 1,353.0m²
- 추정가액 : 400,000천원
- 취득사유 : 사유재산 침해등으로 민원발생과 사유지 매입으로 인한 민원발생 해소 및 친수공간 활용과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

4. 관련법규

- 가.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
- 나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,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
- 다.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제1항

5. 검토의견

- 노인의 여가공간 활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,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며 2007년도 숯못저수지로 생태공원을 조성하였으나, 저수지내 사유지가 일부 있어 사유재산 침해 등 민원발생으로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위 부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
- 그러나, 중구노인지회 부지매입과 관련 2007년도 10월 정부합동감사시 지적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
- 또한 구민운동장 부지매입시 소유자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보상문제로 민원발생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